

#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안내

(BK21사업팀, '22.8.26.)

## 1. 추진 배경

- 팬데믹(코로나19) 상황 완화에 따라 국제화경비 지원기준을 명확화하여, 사업 참여인력의 국제화 역량 증진 기회 확대 제공
  - 특정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타분야의 저명한 우수 국제 전시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, 학문 동향 파악 기회 제공 및 연구력 강화 도모
- 설명회,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대학 현장 의견반영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증대
  -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
- 기타 모호한 문구 수정을 통해 해석상 혼란 해소

## 2. 지침 개정(안)

### ① '국제화경비' 지원기준 명확화

#### ① '국제 전시회' 지원기준 관련 지침

##### ○ (관련 규정)

(지침) 제34조(국제화경비) 2항, 4항, 4항의 1호

(집행기준) 제18조(국제화경비) 3항 4호

##### ○ (개정사유)

- 국제학회와 국제 전시회 지원기준 혼재로 지원 대상 및 참가 인원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명확화 필요
- 또한, 특정 학문분야(디자인·영상) 관련 국제 전시회 참가 시에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오해석하는 경우 다수 발생
- (개선) 국제학회와 국제 전시회 지원기준을 구분하여 명확화하고, 교육연구단(팀) 교육·연구분야와 관련된 전시회 참여 시,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전 학문분야 교육연구단(팀)의 국제화 역량 증진 기회 제공

**<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전·후 주요 비교표 >**

구분	현행	개정(안)
지침	<p>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(국제전시회 포함)는 <u>교육연구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</u></p>	<p><u>&lt;수정&gt;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(국제 전시회 포함)는 <u>교육연구단의 장이 교육연구단의 교육·연구분야와 관련하여 대학원생의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</u></u></p>
	<p>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음.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의 참가는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원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</p>	<p><u>&lt;수정&gt; 국제학술회의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, 국제 전시회의의 지원대상은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.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의 및 국제 전시회는 각 호의 인원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</u></p>
지침	<p>국제학술회의의 참가 시 대학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(단, 권위있는 국제전시회 <u>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</u>)</p>	<p><u>&lt;삭제&gt; 국제학술회의의 참가 시 대학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(단, 권위있는 국제전시회 <del>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</del>)</u></p> <p><u>&lt;추가&gt; 출품자로서 참가하는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(단, 출품작별 총 3인 이내 지원 가능, 단순참가 지원 불가) 교수의 경우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(학생이 출품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)</u></p>
집행기준	<p>국제 전시회의의 경우 단순 참가 지원 불가.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·전시·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</p>	<p><u>&lt;수정&gt; 국제 전시회 참가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, <u>출품작별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 지원 가능.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출품자로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 가능</u></u></p>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② ‘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’ 집행 관련 지침

○ (관련 규정)

(집행기준) 제18조(국제 화경비) 6항 1호

- (개정사유)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의 경우 교육연구단(팀)이 국내·외에서 주최·주관하는 경우 집행 가능하나, 지침 상 문구가 모호하여 해외 국제학술대회는 주최·주관기관이 아니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석하는 경우 다수 발생
- (개선) 지침 상 혼재되어 있는 문구(개최, 주최)를 명확화하여 해석상 혼란 해소

< 집행기준 개정 전·후 주요 비교표 >

현행	개정(안)
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술대회 경비 집행 가능. 국제 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국제 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	교육연구단이 국내·외에서 주최·주관하는 <b>국제 학술대회</b> 경비 집행 가능. 국제 학술대회를 해외에서 <b>주최·주관하는</b> 경우 국제 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②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 ‘국내여비’ 지원 근거 마련

○ (관련 규정)

(집행기준) 제19조(교육연구단 운영비) 2항 3호

- (개정사유) 교육연구단(팀)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경우 참여인력\*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관련 행사 및 회의(워크숍, 간담회 등) 참석 시, 교육연구단(팀) 운영비에서 여비 지원 불가
- \* 참여교수,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
- (개선) 교육연구단(팀) 업무전담 행정직원이 사업 관련 행사 및 회의 참석 시, 교육연구단(팀) 운영비 중 ‘국내여비’에서 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업 운영 효율성 증대 및 고객만족도 제고

**< 집행기준 개정 전 · 후 주요 비교표 >**

현행	개정(안)
교육연구단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음	교육연구단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라 사업 <u>참여인력 및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에게</u> 지급할 수 있음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**③ 기타 문구 수정 : ‘신진연구인력’ 채용 기준 관련 지침**

○ (관련 규정)

(지침) 제14조(신진연구인력) 3항 4호

- (개정사유) 신진연구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지침 상 ‘지원 인원’을 ‘applicant’로 오해석하는 경우 다수 발생
- (개선) ‘채용 인원’으로의 문구 변경을 통해 해석 명확화

**< 집행기준 개정 전 · 후 주요 비교표 >**

현행	개정(안)
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하고, <b>지원 인원</b> 이 3명 미만이거나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않음	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하고, <b>채용 인원</b> 이 3명 미만이거나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않음

※ 개정사항 전문은 [붙임] 참조

**붙임**

**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**

구분	현행	개정(안)
지침	<p>제 34조(국제 화경비)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 학술회의(국제전시회 포함)는 <b>교육연구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</b>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1. 과학기술 분야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 ... (중략)</p> <p>2. 인문사회 분야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 ... (중략)</p> <p>3. 국제전시회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</p> <p>4. &lt;생략&gt;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제1, 2항의 규정에 의한 <b>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b> 단,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 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원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(단,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)</p> <p>2.~4. &lt;생략&gt;</p>	<p>제 34조(국제 화경비)</p> <p>①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&lt;수정&gt;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(국제전시회 포함)는 <u>교육연구단의 장이 교육연구단의 교육·연구분야와 관련하여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</u>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</p> <p>1. 과학기술 분야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 ... (중략)</p> <p>2. 인문사회 분야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 ... (중략)</p> <p>3. 국제전시회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</p> <p>4.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④&lt;수정&gt; 제1, 2항의 규정에 의한 <u>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제1호부터 제4호, 국제 전시회 지원대상은 제5호 및 제6호와 같다.</u> 단,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<u>온라인 국제 학술회의 및 국제 전시회 참가 시에는 각 호의 인원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<u>&lt;삭제&gt; (단,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)</u></p> <p>2.~4.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
구분	현행	개정(안)
	<p>⑤~⑦ &lt;생략&gt;</p>	<p><u>&lt;신설&gt; 5. 출품(전시·시연)자로서 참가하는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(단, 출품(전시·시연)작별 총 3인 이내 가능하며, 단순참가는 지원 불가)</u>  <u>&lt;신설&gt; 6. 교수의 경우 제5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(학생이 출품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)</u></p> <p>⑤~⑦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집행 기준</p>	<p>제18조(국제화 경비)</p> <p>①~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. &lt;생략&gt;</p> <p>3.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(학술)대회는 지침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 ... (중략)</p> <div data-bbox="272 1285 828 1749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[국제(학술)대회 인정기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학기술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 ... (중략)</li> <li>○ 인문사회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 ... (중략)</li> <li>○ 국제전시회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</li> <li>○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,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·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</li> </ul> </div> <p>4. 국제(학술)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 ... (중략)</p>	<p>제18조(국제화 경비)</p> <p>①~②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.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3.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(학술)대회는 지침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 ... (중략)</p> <div data-bbox="868 1285 1423 1749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[국제(학술)대회 인정기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학기술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 ... (중략)</li> <li>○ 인문사회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 ... (중략)</li> <li>○ 국제전시회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... (중략)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</li> <li>○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,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·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</li> </ul> </div> <p>4. <u>&lt;수정&gt;</u> 국제(학술)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 ... (중략)</p>

구분	현행	개정(안)
	<p>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,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·전시·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.</p> <p>④~⑤ &lt;생략&gt;</p> <p>⑥ 기타 교육연구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술대회(국제 학술행사를 포함한다.) 경비(회의장 대여료, 행사개최비, 회의비, 다과비, 인쇄비 등)를 집행할 수 있다. 단,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3항에 따른 국제 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.</p> <p>2.~3.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⑦ &lt;생략&gt;</p>	<p><u>국제 전시회 참가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, 출품(전시·시연)자로서 참가하는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. 다만, 이때에도 출품(전시·시연)작별 총 3인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. 또한, 참여교수의 경우에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자로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.</u></p> <p>④~⑤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⑥ 기타 교육연구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&lt;수정&gt; 교육연구단이 국내·외에서 주최·주관하는</u> 국제학술대회(국제 학술 행사를 포함한다.) 경비(회의장 대여료, 행사개최비, 회의비, 다과비, 인쇄비 등)를 집행할 수 있다. 단,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<u>주최·주관하는</u> 경우 3항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.</p> <p>2.~3.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⑦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집행 기준	<p><b>제 19조(교육연구단 운영비)</b>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, 성과급, 국내여비, 학술활동지원비, 산업재산권출원 등록비, 일반수용비, 회의 및 행사개최비, 기타로 나누어 집행할 수 있으며,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. &lt;생략&gt;</p> <p>3.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</p>	<p><b>제 19조(교육연구단 운영비)</b></p> <p>①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1.~2.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3. <u>&lt;수정&gt;</u>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</p>

구분	현행	개정(안)
	<p>(단, 국·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라 사업 참여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4.~8. &lt;생략&gt;</p>	<p>(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<b>사업 참여인력 및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</b></p> <p>4.~8.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지침	<p><b>제 14조(신진연구인력)</b></p> <p>①~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~3. &lt;생략&gt;</p> <p>4.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<b>지원 인원</b>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... (중략)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~⑤ &lt;생략&gt;</p>	<p><b>제 14조(신진연구인력)</b></p> <p>①~②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~3.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4. <b>&lt;수정&gt;</b>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<b>채용 인원</b>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... (중략)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~⑤ &lt;생략&gt; &lt;현행과 같음&gt;</p>